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93회 제2차 정례회

심사보고서



2022. 11.

경제도시위원회

목 차

1.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	1
2.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3
3.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5
4.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8
5.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	11
6. 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3
7.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수면 점용료 · 사용료 징수 조례안	15
8.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7
9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월광2수변공원)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	19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2. 11. 18.

경제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발의자: 김장관 의원 등 8명(서민우, 강한곤, 김기열, 박종길, 이선주, 남현주, 정순옥)
- 발의일자: 2022. 11. 4.
- 회부일자: 2022. 11. 4.
- 상정 및 의결: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
(2022. 11. 18.)

2. 제정이유

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에 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활동의 지원범위와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(안 제3조, 안 제4조)
- 중복지원 금지 및 보고·검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-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방법에 대한 사항(안 제7조)
- 포상 및 준용에 대한 사항(안 제8조, 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제16조
 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2. 11. 4. ~ 2022. 11. 15.) 결과: 의견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김병욱)

- 본 조례안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범위,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도·감독, 개인 또는 단체의 포상을 규정하고 있음.
- 화재 등 재난발생시 화재진압 및 구조·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관계법령 등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과 충복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입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